

「교원 국외여행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06. 2. 28. 개정 판 (시행 2006. 3. 1.) → 2020. 2. 24. 개정 판 (시행 2020. 3. 1.)

바뀜 3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133/compare?from=339&to=1035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9:02:46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보강) 국외여행으로 인한 결강은 해당 학기 중에 반드시 보강하여야 하며, 보강결과를 교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.	제6조(보강) 국외여행으로 인한 결강은 <u>보강계획서에 의해 해당 학기 중에</u>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-02-24>
제7조(귀국보고) 교원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귀국보고와 함께 여권사본 등 여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해야하며, 제4조 제3항의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,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과 전임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.	제7조(귀국보고) 교원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귀국보고와 함께 여권사본 등 여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하며(서식 제7-1호), 제4조 제3항의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,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과 전임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. <개정 2020-02-24>
제8조(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조치) 제6조의 보강에 관한 사항과 제7조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행하지 않는 자는 행·재정적 불이익을 받는다.	제8조(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조치) ① 제6조의 보강에 관한 사항과 제7조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행하지 않는 자는 행·재정적 불이익을 받는다. ② 이 규정에 따른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국외 여행을 하거나 여행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교무처장은 해당 교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고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 <신설 2020-02-24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교원 국외여행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"해당"을 "보강계획서에 의해 해당"으로 하고, "하며, 보강결과를 교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"를 "한다"로 한다.

제7조 중 "제출해야하며"를 "제출해야 하며(서식 제7-1호)"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조치) ① 제6조의 보강에 관한 사항과 제7조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행하지 않는 자는 행·재정적 불이익을 받는다.

② 이 규정에 따른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국외 여행을 하거나 여행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교무처장은 해당 교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고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